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 846

2019년 9월 6일 보건복지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9년 8월 7일 정진술 의원 대표발의

2. 회부일자 : 2019년 8월 13일

3. 상정일자 : 제289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

【2019년 9월 2일 상정· 의결(수정안가결)】

Ⅱ. 제안설명의 요지(정진술 의원)

- 1. 제안이유
- 가. 2018년 12월 11일 헌혈증진 및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특별 시 등에 헌혈추진협의회(이하"협의회"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도록 「혈액관리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「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반영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,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서울특별시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음. (안 제8조)
- 나. 서울특별시헌혈추진협의회 기능을 규정함.(안 제9조)
- 다. 서울특별시헌혈추진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규정함.(안 제10조)
- 라. 서울특별시헌혈추진협의회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함.(안 제11조)
- 마. 서울특별시헌혈추진협의회 위원의 해촉을 규정함.(안 제12조)
- 바. 서울특별시헌혈추진협의회 운영에 대해 규정함.(안 제13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「혈액관리법」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Ⅲ.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1 개정안의 취지

 개정안은 「혈액관리법」(이하 "법")의 최근 개정된 사항을 「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(이하 "조례")에 반영하고자 제안된 안으로 헌혈추진협의회(이하 "협의회")를 구 성할 수 있도록 제안된 안임.

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

가. 목적조항의 수정과 관련

- 개정안은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의 목적조항을 수정하였음. 현행 조례는 「혈액관리법 시행령」(이하 "법 시행령")제 2조2항1)에 근거한 위임조례인바, 각주와 같이 해당 조항은 헌혈 권장에 관하여 중앙정부의 정책에의 협조의무를 명시하고 있음.
- 개정안에서 목적조항의 수정을 위하여 법 제4조의4²⁾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헌혈추진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

¹⁾ 제2조(헌혈의 권장) ①보건복지부장관은 「혈액관리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의 수급조절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②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기관은 제1항에 따른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,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혈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공공단체·민간단체 또는 혈액원에 대하여 헌혈권장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 <생략>

²⁾ 제4조의4(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 사회의 주민·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또는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

있는데, 협의회는 법에 따라 시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주민·단 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 하는 협의회로 규정하고 있음.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「혈액관리</u>	제1조(목적) <u>「혈액관리</u>
법 시행령」 제2조제2항의 규정에	법」 제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
<u>따라</u>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	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헌혈추
하고자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	진협의회를 구성하고,
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	
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	
으로 한다.	<u>,</u>

- 현행 조례의 발의목적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, 헌혈 증진 및 헌혈장려인 점에서 볼 때,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목적조항에서 강조되는 경우 협의회의 구성을 위한 조례로 보일 수 있어 협의회의 구성 외 헌혈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펼치기 어려운 점이존재할 수 있음.
- 또한 조문의 인용에서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를 구성한다고 하였으나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은 중앙정부에의 협조를 규정하는 조문으로 인용에서 간명성이 떨어진다고 할 것임.
 -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은 협의회가 아닌 보건복지부의 혈액수급 계획 및 권장에 대한 협조의무를 규정하고 있음. 권장에 대한

의무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제2조제2항이 협의회의 구성을 의미 한다고 볼 여지가 존재하나 명확하게 협의회 구성 근거로 규정 하기 어려움.

나. 협의회의 구성과 관련

- 개정안의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신설조항으로 협의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구성(제8조), 기능(제9조), 위원의 임기(제10조), 위원장의 직무(제11조), 위원의 해촉(제12조), 협의회의 운영(제13조)로 제안 되었음.
- 협의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집행부서에서
 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.

우리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2017년 6월 서울특별시 헌혈추진협의회 위원장을 시민건강국장으로 하여 운영 중에 있고, 본 위원회의 경우 소관 업무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국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함.

개정안	집행부의견
협의회의 위원장은 <u>행정1부시장</u> 이 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	협의회의 위원장은 <u>헌혈관련 업무 부</u> <u>서의 국장</u> 으로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서 호선한다
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 관련 업무 부 서의 <u>과장</u> 으로 한다.	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 관련 업무 부 서의 <u>팀장</u> 으로 한다.

- 현재 집행부서의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은 2017년 구성되어 세계 헌혈자의 날 기념 유공자 포상을 주요한 업무로 하고 있는데 이 는 협의회의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 움.
 - 현재 구성된 협의회의 주요한 업무가 홍보에 치중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홍보 역할이 수행되었다기 보다는 대한적십자사의 추천에 의한 서울시장의 표창이 2017년과 2018년 2회에 걸쳐 이루어 졌으며, 공적심의는 시민건강국장과 시민건강국 소관의 각 과장에 의해 이루어졌음. 또한 2019년 6월 14일이 헌혈의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례적인 표창조차 수여되지 않은 상황임.

-	구분	소속	직위
위	원 장	서 울 시 청	시민건강국장
위	원	서 울 시 청	보건의료정책과장
위	원	서울특별시교육청	체육건강과장
위	원	서울지방경찰청	경무과장
위	원	수도방위사령부	인시근무과장
위	원	뉴 시 스	사회정책부장
위	원	삼성서울병원	진단검사의학과장
위	원	대학적십자사 서부혈액원	혈액원장
위	원	한마음혈액원	혈액원장
위	원	중앙대학교병원 혈액원	혈액원장

이에 혈액수급의 안정화와 시민의 적극적인 헌혈참여 확대를 위한 효율적인 홍보 및 설득방안의 마련을 위해 협의회의 구성과역할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할 것이며, 실효성 있는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관련예산의 편성 등에 있어 미온적인 상황임.

다. 협의회의 위원의 구성 관련

개정안 제8조는 협의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시민·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 이 중 상기에 서술된 집행부의 의견을 제외하고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의 구성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음.

개정안 제8조

<생략>

- ④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헌혈 관련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 - 1.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
 - 2. 교육지원청, 경찰서, 소방서, 군부대, 보건·의료기관, 민간단체, 적십자 혈액원 등의 기관이나 단체의 장 또는 관계자
 - 3.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시민
 - ⑤ 위원장은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내에 실무지원반을 둘 수 있다.

법 제4조의4³⁾는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조례에 위임된 사항으로 보여지는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.

3 종합의견

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서 특별히 지정되지 않고 조례에 위임된 내용을 추가하는 바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서는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, 일부 조문의 명확성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.

³⁾ 제4조의4(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 사회의 주민·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또는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

Ⅳ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: 「없음」

Ⅵ. 심사결과 : 수정 가결

Ⅷ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Ⅷ. 기타 필요한 사항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수정안

의안 관련 번호 846 제안연월일: 2019년 9월 3일 제 안 자:보건복지위원장

1. 수정이유

○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고, 현행 사업의 진행사항을 조례에 반 영함.

2. 주요내용

- 서울특별시 헌혈추진협의회 운영사항의 반영(제8조제3항, 제13조 제3항)
- 지방의회의장의 추천이 아닌 지방의회의 추천으로 수정(제8조제 4항제1호)

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8조제3항 중 "행정1부시장"을 "시민건강국장"으로 한다.

안 제8조제4항제1호를 중 "서울특별시의회의장"을 "서울특별시의회"로 한다.

안 제13조제3항 중 업무부서의 "과장"을 업무부서의 "팀장"으로 한다.

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<신구조문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	제1조(목적)	제1조 <개정안과 같
「혈액관리법 시행	「혈액관리법」 제4	음>
령」 제2조제2항의	조의4 및 같은 법 시	
규정에 따라 시민의	행령 제2조제2항의	
생명과 건강을 보호	규정에 따라 헌혈추	
하고자 시민의 헌혈	진협의회를 구성하	
이 증진될 수 있도록	<u> 1,</u>	
헌혈활동을 장려하기		
위하여 필요한 사항		
을 규정함을 목적으		
로 한다.		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	제2조(정의)	제2조
서 사용하는 용어의		
뜻은 다음과 같다.	<u>.</u>	
<u> <신 설></u>	1. "헌혈"이란 건강한	1. <개정안과 같음>
	사람이 자기의 혈액	
	을 수혈이 필요한	
	환자에게 수혈할 수	

	있도록 혈액원에 무	
	<u>상으로 제공하는 것</u>	
	을 말한다.	
<u>1</u> . ~ <u>3</u> . (생 략)	<u>2</u> . ∼ <u>4</u> . (현행 제1호	<u>2</u> . ∼ <u>4</u> .<개정안과 같
	부터 제3호까지와	음>
	같음)	
<u><신 설></u>	제8조(헌혈추진협의회	제8조(헌혈추진협의회
	구성) ① 「혈액관리	<u>구성) ① ② <개정안</u>
	법」제4조의4에 따라	과 같음>
	시장은 헌혈 증진을	
	위한 홍보 및 적극적	
	인 헌혈기부문화 조	
	성을 위하여 지역사	
	회의 시민・단체 또	
	는 공공기관이 참여	
	하는 서울특별시헌혈	
	추진협의회(이하"협	
	의회"라 한다)를 구	
	 성할 수 있다.	
	② 협의회는 위원장	
	과 부위원장 각 1명	
	을 포함하여 15명 이	
	내의 당연직 위원과	
	위촉직 위원으로 구	
	성한다.	

-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의 행정1부시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④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헌혈 관련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- 1.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
- 2. 교육지원청, 경찰 서, 소방서, 군부대, 보건·의료기관, 민 간단체, 적십자 혈 액원 등의 기관이나 단체의 장 또는 관 계자
- 3.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

- ③ 협의회의 위원장 은 시민건강국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위 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④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헌혈 관련 업무 당자 중에서 시장이 기명하는 사람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- 1. 서울특별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
 2~3<개정안과 같음>

	심이 많은 시민	⑤ <개정안과 같음>
	⑤ 위원장은 협의회	
	의 효율적 운영을 위	
	하여 협의회 내에 실	
	무지원반을 둘 수 있	
	<u>다.</u>	
<u><신 설></u>	제9조(협의회 기능) 협	제9조 <개정안과 같
	의회는 다음 각 호의	<u>음></u>
	사항을 협의한다.	
	<u>1. 지역사회 중심의</u>	1 ~ 6 <개정안과 같음>
	안정적인 헌혈자원	
	확보_	
	2. 체계적이고 효율적	
	인 헌혈권장 및 장	
	<u>려</u>	
	3. 혈액수급 부족 등	
	위기관리대책 마련	
	4. 헌혈자원봉사활동	
	<u>지원</u>	
	5. 제4조에 따른 사업	
	계획의 추진	
	 6. 헌혈 관련 정보의	
	제공 및 홍보	
<신 설>	제10조(위원의 임기) 위	 제10조 <개정안과 같
	원의 임기는 2년으로	음>
		<u> </u>

	원명 최 원제마 어이	
	하며 한 차례만 연임	
	<u>할 수 있다. 다만, 공</u>	
	무원인 위원의 경우	
	에는 해당 직에 재직	
	하는 기간으로 하며,	
	보궐위원의 임기는	
	전임자 임기의 남은	
	기간으로 한다.	
<u><신 설></u>	제11조(위원장 등의 직	제11조 ①, ② <개정
	무) ① 위원장은 협의	<u> 안과 같음></u>
	회를 대표하고, 업무	
	를 총괄한다.	
	② 부위원장은 위원	
	장을 보좌하고, 위원	
	장이 부득이한 사유	
	로 직무를 수행할 수	
	없을 때에는 그 직무	
	를 대행한다.	
<신 설>	제12조(위원의 해촉) 시	제12조 <개정안과 같
	장은 위촉직 위원이	음>
	다음 각 호의 어느 하	
	나에 해당하는 사유	
	가 있는 경우에는 해	
	당 위원을 해촉할 수	
	<u>있다.</u>	

1. 임기 중 사임의 의 1. ~ 5. <개정안과 같 <u>음</u>> 사를 표시한 경우 2.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직무 수행 에 적합하지 아니하 거나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 은 경우 3. 질병이 있거나 6개 월 이상 해외장기체 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 4. 직무와 관련된 비 위사실이 있는 경우 5. 그 밖에 위원의 직 무를 수행하기 어렵 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 ① ② <개정안 <신 설> 제13조(협의회 운영 등) ① 협의회의 회의는 과 같음>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 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 다.

	② 협의회 회의는 재	
	적위원 과반수의 출	
	석위원 과반수의 찬	
	<u>성으로 의결한다.</u>	
	③ 협의회의 사무를	③ 협의회의 사무를
	처리하기 위하여 간	처리하기 위하여 간
	사 1명을 두며 간사	사 1명을 두며 간사
	는 헌혈 관련 업무 부	는 헌혈 관련 업무 부
	서의 과장 으로 한다.	서의 팀장 으로 한다.
	④ 협의회에 참석한	<u>④ <개정안과 같음></u>
	위촉직 위원에 대해	
	서는 예산의 범위에	
	서 「서울특별시 위	
	원회 수당 및 여비 지	
	급 조례」에서 정하	
	는 바에 따라 여비 등	
	을 지급할 수 있다.	
<u>제8조</u> ~ <u>제11조</u> (생	<u>제14조</u> ~ <u>제17조</u> (현행	<u>제14조</u> ~ <u>제17조</u> <개
략)	제8조부터 제11조까	정안과 같음>
	지와 같음)	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「혈액관리법 시행령」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"를 "「혈액관리법」 제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,"로 한다.

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"헌혈"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혈액을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 게 수혈할 수 있도록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

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,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(헌혈추진협의회 구성) ① 「혈액관리법」제4조의4에 따라 시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、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서울특별시헌혈추

진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

-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민건강국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④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헌혈 관련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 - 1. 서울특별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
 - 2. 교육지원청, 경찰서, 소방서, 군부대, 보건、의료기관, 민간단체, 적십자 혈액원 등의 기관이나 단체의 장 또는 관계자
 - 3.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시민
- ⑤ 위원장은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내에 실무지원반을 둘수 있다.

제9조(협의회 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

- 1.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
- 2.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권장 및 장려
- 3.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대책 마련
- 4. 헌혈자원봉사활동 지원
- 5.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추진
- 6. 헌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홍보

- 제10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제11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업무를 총 괄한다.
 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12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 - 1. 임기 중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
 - 2.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
 - 3. 질병이 있거나 6개월 이상 해외장기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 - 4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 - 5.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제13조(협의회 운영 등)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

정하는 경우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.

-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 관련 업무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.
- ④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<신구조문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「혈액관리</u>	제1조(목적) <u>「혈액관리</u>
법 시행령」 제2조제2항의 규정에	법」 제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
<u>따라</u>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	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헌혈추
하고자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	진협의회를 구성하고,
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	
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	
으로 한다.	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<u> <신 설></u>	1. "헌혈"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기
	의 혈액을 수혈이 필요한 환자
	에게 수혈할 수 있도록 혈액원
	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
	<u>한다.</u>
1. ~ 3. (생 략)	$\underline{2}$. \sim $\underline{4}$. (현행 제 1 호부터 제 3 호까
	지와 같음)
<u> <신 설></u>	제8조(헌혈추진협의회 구성) ①
	「혈액관리법」제4조의4에 따라
	시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

-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·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서울특별시 헌혈추진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
-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민건강국 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④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헌혈 관련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- 1. 서울특별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
- 2. 교육지원청, 경찰서, 소방서, 군부대, 보건·의료기관, 민간단체, 적십자 혈액원 등의 기관이나 단체의 장 또는 관계자
- 3.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 에 관심이 많은 시민

	⑤ 위원장은 협의회의 효율적 운
	영을 위하여 협의회 내에 실무지
	원반을 둘 수 있다.
<u><신 설></u>	제9조(협의회 기능) 협의회는 다음
	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
	1.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
	혈자원 확보
	2.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권장
	 및 장려
	3.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대
	책 마련
	4. 헌혈자원봉사활동 지원
	5.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추진
	6. 헌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홍보
<신 설>	제10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
<u> </u>	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
	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
	경우에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
	간으로 하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
	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<신 설>	제11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
<u> へじ </u>	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업무를
	<u> </u>
	<u> </u>
	고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

<신 설>

<신 설>

<u>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</u>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2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- 1. 임기 중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
- 2.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 나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
- 3. 질병이 있거나 6개월 이상 해외 장기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 기 어려운 경우
- 4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- 5.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13조(협의회 운영 등) ① 협의회의 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.

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 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

| 혈관련업무부서의팀장으로한다. | ④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| 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|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 | 비 지급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| 따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| 제14조 ~ 제17조 (현행 제8조부터

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1조까지와 같음)

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

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